

식품등의 재검사 결과 통보서

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영업자	명칭(상호)	
	대표자 성명	영업의 종류
	소재지 (전화번호:)	

재검사 대상 제품	명칭	제조회사 명칭(상호)
	식품 유형(식품만 해당합니다)	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
	부적합 검사항목	부적합 검사 결과

재검사 결과	☐ 적합 ☐ 부적합
	부적합 검사항목

「식품위생법」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